공고부: 제 2025-02호

[별지 제1호 서식]

공 고

제4대 광주광역시북구골프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미등록에 따라 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회장 선거일
 - 일 시 : 2025년 1월 19일(일) 10시~16시
 - 장 소 : 북구 골프협회 사무실

2.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
 - 2025년 1월 13일 10시 ~ 2025년 1월 14일 17시까지(2일간)
 - 접수 : 북구 골프협회 사무실
 - 기탁금 납부(후보자 명의로 납부) 2025년 1월13일 ~ 1월14일 (2일간)
 납부계좌 : 선완래 (북구골프협회) 은행명(광주) 계좌번호 141-121-478151

※ 1차 공고기간 2025년 1월 2일 ~ 2025년 1월 3일

※ 2차 공고기간 2025년 1월 6일 ~ 2025년 1월 7일

3. 선거운동 기간
 - 2025년 1월 15일 10시 ~ 2025년 1월18일 17시까지(4일간)

※별첨. 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

2025년 1월 13일

광주광역시북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위원장

◎ 제4대 광주광역시북구골프협회 회장선거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

- 관련근거 : 광주광역시북구골프협회 종목단체 규약

제2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개정 20. 01 .21.> <개정 22. 02. 18.>
3. <삭제 20. 01. 21.>
4. <삭제 20. 01. 21.>
5. <삭제 20. 01. 21.>
6. <삭제 20. 01. 21.>
7. <삭제 20. 01. 21.>
8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.) <개정 20. 01. 21.> <개정 22. 02. 18.> <개정 23. 05. 17.>
9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20. 01. 21.> <개정 22. 02. 18.>
9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3. 5. 17.>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신설 23. 5. 17.>
9의3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3. 5. 17.>
10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2. 02. 18.>
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
<개정 20. 01. 21.> <개정 22. 02. 18.>
11. 국회의원 및 광역·기초의원 <개정 20. 09. 25.>
12. 사회적 물의,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<개정 22. 02. 18.>
13.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(종목단체, 구체육회)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<신설 19. 02. 28.> <개정 20. 11. 27.> <개정 22. 02. 18.><개정 23. 05. 17.>

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<개정 22. 02. 18.>

③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 <개정 20. 11. 27.> <개정 22. 02. 18.>

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
[별지 제6호 서식]

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

1. 성 명: (한자:)
2. 주민등록번호:
3. 등록기준지:
4. 주 소:
(전화번호: , 휴대전화번호:)
5. 직 업:
6. 학 력:
7. 경 력:

2025년 1월 19일 실시하는 제4대 광주광역시북구골프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○ ○ ○ ㊞

광주광역시북구골프협회선거운영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: 1. 가족관계증명서 1통.

2.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(통).

가.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

나.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(별지 제7호 서식)

다.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라. 경력 부존재 확인서(별지 제8호 서식)

마. 본인 서약서(별지 제9호 서식)

바.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사. 위법·부당거래 금지 서약서(별지 제10호 서식)

3. 이력서 1부.

주: 1.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,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.

2.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(2개 정도)만을 적습니다.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.

3.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
4.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.